

[청주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 안내]

1. 사용전검사 신청에 관한 사항

◆ 사용전검사 제도란...

- ▶ 정보통신공사법 제36조에 의거 신·증축 건축물내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, 방송공동수신설비,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등에 대해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

◆ 대 상

- ▶ 연면적 150㎡를 초과하는 건축허가대상 건축물(건축신고대상 및 감리대상 제외)

◆ 신 청 인

- ▶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,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,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(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를 시공한 자 포함)

◆ 처리부서

- ▶ 시청 정보통신과 ⇒ 7층이상 또는 연면적 2,000㎡이상의 건축물로 시청 건축디자인과에서 건축허가승인을 받은 건축물
- ▶ 관할구청(상당, 서원, 흥덕, 청원구청) 행정지원과
⇒ 6층이하로써 연면적 2,000㎡미만의 건축물로 구청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승인을 받은 건축물

◆ 처리절차

신청서 제출 확인 ⇒ 민원실 접수 ⇒ 현장검사 ⇒ 검사결과 적합시 필증 교부
(담당부서) (담당부서) (부적합시 보완 후 재검사 신청)

◆ 처리기한

- ▶ 법정처리기한 ⇒ 14일(청주시 자체 시행 ⇒ 9일)
- ▶ 처리기한이 단축 시행되므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신청을 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◆ 구비서류

- ▶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, 준공설계도면(사본) 1부, 건축허가서(사본) 1부,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(사본) 1부

◆ 기타사항

- ▶ 사용전검사 기술기준 ⇒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홈페이지 참고
- ▶ 사용전검사 위임장 제출시 위임장 내용 ⇒ 검사신청 및 필증수령에 관한 위임사항 기재
- ▶ 사용전검사 민원신청서식(신청서, 위임장 등) ⇒ 시홈페이지 민원사무편람메뉴에서 다운로드
- ▶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법 제25조에 의거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합니다. (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: 정보통신공사법 제76조 4항)

2. 감리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

◆ 대 상

- ▶ 6층이상 또는 연면적 5,000㎡ 이상에 정보통신공사를 완료한 건축물

◆ 처리부서

- ▶ 시청 정보통신과 ⇒ 시청 건축디자인과에서 건축허가승인을 받은 감리대상 건축물
- ▶ 관할구청 행정지원과 ⇒ 구청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승인을 받은 감리대상 건축물

◆ 처리절차

결과보고서 제출 및 접수 (담당부서) ⇒ 결과보고서 확인 (담당부서) ⇒ 감리확인결과서 교부

◆ 구비서류

- ▶ 감리결과보고서 사본 1부(제본)
※ 감리는 사용전검사 신청서 생략 및 검사수수료 면제

※ 감리결과보고서의 구성(담당부서 확인사항)

감리결과보고서 확인요청서(시홈페이지 서식 참고), 감리결과보고서, 시공상태의 평가결과서,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서, 정보통신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서, 감리업체 확인사항(감리계약서,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, 감리원 자격증사본 및 재직증명서 등), 공사업체 확인사항(공사도급계약서, 공사업등록증, 현장대리인계 등). 구내통신(광회선포함) 링크테스트결과, TV신호레벨측정결과, 접지저항측정결과, 현장시공사진, 정보통신준공도면(권장사항)

◆ 기타사항

- ▶ 감리결과보고서 위임장 제출시 위임장 내용 ⇒ 감리 신청 및 감리확인결과서 수령에 관한 위임사항 기재
- ▶ 감리 민원신청서식(감리확인요청서, 위임장 등) ⇒ 시홈페이지 민원사무편람메뉴에서 다운로드

3. 착공전 정보통신 설계도면 검토에 관한 사항

◆ 착공전 설계도 검토제도란...

- ▶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제6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전에 설계의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

◆ 대 상

- ▶ 연면적 150㎡를 초과하는 건축허가대상 건축물

◆ 처리절차

건축주가 건축허가 복합민원 신청 → 건축디자인과(구청 건축과)에서 담당부서 협의 요청
 → 담당부서에서 정보통신설계도서 검토 → 담당부서에서 건축디자인과(구청 건축과)로 회신
 → 건축주에게 결과 통보

◆ 구비서류

- ▶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서 1부(세움터에 설계도면 일괄 등록)

◆ 기타사항

- ▶ 설계도 작성은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된 용역업자 또는 기술사 사무소 개설자
- ▶ 용역업체 대표자, 설계도서 작성자는 설계도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함
(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)

◎ 관련법령

현행 법령	주요 내용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정보통신공사업법 ·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	정보통신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전파법 ·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·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· 접지설비· 구내통신설비·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· 단말장치기술기준 	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시공 관련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 	정보통신공사 민원신청서식 등

◎ 사용전검사수수료

(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근거)

구 분	건당 수수료
5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	20,000원
500제곱미터 이상 1,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	30,000원
1,000제곱미터 이상 3,3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	40,000원
3,3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	60,000원
재검사 수수료	각 해당 수수료의 50%

◎ 문의전화

- 청주시청 정보통신과 통신민원팀 전화 : 201-1353
- 상당구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전화 : 201-5053
- 서원구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전화 : 201-6054
- 흥덕구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전화 : 201-7053
- 청원구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전화 : 201-8054